

한국의 원조는 선진화되고 있는가?

이 계 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박 태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문위원

I. 서론

세계개발원조 4차 총회를 개최한 2011년에 이어서, 2012년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 제공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이다. 한국은 2010년부터 세계개발원조의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2012년에는 처음으로 DAC회원국의 동료평가(peer review)를 받는 해이기 때문이다. DAC는 30개의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22개의 회원국과 EU로 구성되어있었는데, 2010년에 한국이 24번째 회원이 되었다.

DAC의 회원국은 매 2-3년 마다 다른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동료평가반(peer review team)에 의해서 자국의 원조정책과 실행에 관하여 평가를 받게 되어있고, 그 결과는 투명하게 전 세계에 공개된다. 평가결과는 구속력이 없지만, 모든 국가는 회원가입 시에 평가반의 권고사항을 정책과 실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서약을 했다. 따라서 한국도 2012년 동료평가반의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받는 2012년의 동료평가의 핵심은 한국이 DAC의 회원이 된 후 원조정책과 실행에서 과거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다시 권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의 기초는 2008년에 OECD/DAC가 발간한 한국의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될 것이다(OECD 2008). 한국은 DAC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이미 2008년에 회원국의 동료평가반에 해당하는 특별평가반(special review team)에 의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실행에 관하여 평가를 받았고, 그 보고서는 전 세계에 공개되었다. 이미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정책과 실행에 변화를 보일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정부가 2008년에 DAC에 가입하기로 결정한 후 과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실적이 DAC가 권고한 방향으로 선진화를 보이고 있는가를 점검하려고 한다. 2008년 OECD/DAC가 마련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특별보고서는 여러 사항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일원화된 규범과 전략적 지침 없이 유·무상원조로 나뉘어 각각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고, 무상원조는 다시 40개에 가까운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통일된 전략 없이 소규모로 수행되는 파편화 현상(fragmentation) 때문에 원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원조자원의 지역별-국가별, 소득수준별, 부문별 배분에서 DAC의 권고와 상치되고 빈곤감소라는 범세계적인 원조목표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원조배분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를 검토하는데 초점을 두고, 앞으로의 정책결정과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먼저, 이론상으로 어떠한 원조의 배분이 가장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간단히 검토한다. 둘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와 비교하기 위하여, DAC 회원국들의 지역별, 국가별, 소득수준별, 부문별 배분 정책과 실적 현황을 점검하고, 최적합 원조배분이론과 비교한다. 셋째,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최근에 어떻게 배분되어 왔고, 그 배분 정책과 실적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지도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수행하는 유상원조(EDCF)와 외교통상부의 지도감독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무상원조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끝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정책결정과 수행에 참고 될 권고사항을 기술한다.

II. 원조배분이론과 DAC 회원국의 원조배분 현황

1. 최적합 원조배분이론

원조를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는 원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있다. 원조의 효과성이란 것은 결국 원조의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공적개발원조의 목적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어왔다(이계우, 2011).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합의한 새천년 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공표된 이후에는 원조의 목적이 개도국의 빈곤감소에 있다는 점에 거의 이견이 없다. 물론 빈곤감소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빈곤감소를 빈곤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법만으로써는 부와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일 수 없고, 경제전체의 성장을 통하여 고용과 분배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면 개도국의 빈곤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어떻게 원조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가 하는 원조배분정책의 문제는, 배분된 원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이다. 2005년의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OECD, 2005)이나 2011년에 부산에서 개최된 제 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의 결과문서(OECD, 2011)가 원조배분의 문제를 무게 있게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학문적으로는 Collier and Dollar(2002)가 효과적인 원조배분이론 (optimal aid allocation model)을 가장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원조의 목적이 개도국의 빈곤감소에 있다면, 원조가 실제로 개도국에서 빈곤감소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실증적인 문제의 답을 구하는데 도전하였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세계은행(1998)의 연구와 Burnside and Dollar(2000)의 연구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모든 원조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에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수원국의 개발정책과 제도가 건전할 때에만 원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조가 1% 증가하면 경제성장은 0.5%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수원국의 빈곤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빈곤감소의 효과도 클 것이라는 실증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을 얻었다(Dollar and Kraay, 2001).

Collier and Dollar(2002)는 원조의 효과에 관한 이러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합 원조배분이론을 수립하였다. 원조의 목적이 개도국의 빈곤 감소를 최대화하는데 있다면, 이러한 목적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통계이론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최적합 원조배분이론을 제안한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원조가 빈곤감소라는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원조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첫째, 원조는 빈곤률이 높고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둘째, 빈곤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 즉 인구규모가 큰 국가에 원조가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원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전한 개발정책과 제도가 수립되어 있는 국가에 원조가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발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시장경제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책과 제도 즉 시민권과 정치참여권의 신장을 포함한다(Collier and Dollar, 2004, Neumayer, 2003). 넷째, 원조는 빈곤감소의 경제 성장 탄력성이 높은 개도국에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

즉 경제 전체의 성장이 빈곤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도국에 원조가 더 많이 배분되어야 한다. 이 탄력성은 소득분배의 균형수준과 빈곤률이 높을수록 크다는 것이다.

Collier and Dollar(2002)는 이러한 최적합 원조배분이론을 이용하여 당시의 실제 원조배분자료를 분석한 결과, DAC 회원국의 원조배분실적은 최적합 원조배분 이론과 상당히 큰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당시에 원조를 받는 개도국에서는 매년 90만 명의 빈곤인구가 빈곤수준을 벗어나고 있었는데, 최적합 원조배분이론에 따라서 원조를 배분한다면 이의 두 배가 되는 약 180만 명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DAC 회원국의 원조배분 현황

물론 Collier and Dollar(2002)의 최적합 원조배분이론이 수립되기 이전에도, 현실

세계의 원조배분 정책과 실적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이론적 배경이 빈약하였다. 단순히 원조가 경제사회의 발전이라는 수원국의 필요(recipient-country needs)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원조는 효과적이라고 추정하고 현실세계의 관행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이 수원국의 소득 수준이나 인력개발의 필요 및 인구규모나 정치적 경제적 제도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DAC 회원국의 양자원조보다는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다자원조가 더 수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원조배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aizels and Nissanke 1984).

또 사용하는 분석의 모델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Trumbull and Wall(1994), Wall(1995), Bandyopadhyay and Wall(2007) 연구이다. DAC회원국이 수원국의 니즈를 부분적으로 고려한다는 논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힌 논문도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수원국의 니즈를 고려한다는 연구도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의 가장 큰 원인은 분석의 모델이 수원국의 필요만 고려하고 공여국의 이익(donor-country interests)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된 변수의 계수가 편파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이 약한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공여국이 원조를 제공할 때에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이나 빈곤감소라는 목적 이외에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Alesina and Dollar, 2000, Alesina and Weder, 2002). 예를 들면, 원조의 배분이 수원국의 소득수준이나 정책과 제도의 우수성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의 표결에 동참하는 국가나 과거의 식민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하고, 부패가 심한 개도국에도 많은 원조가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원국 필요모델의 실증적 연구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련의 연구들은 불완전하지만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일련의 실증적 연구들은 DAC 회원국의 원조가 정책과 제도가 우수하고 빈곤률이 높은 개도국에 점차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Dollar and Levin(2004)의 연구를 시작으로 Berthelemy and Tichit(2004), Berthelemy(2006), Sundburg and Gelb(2006)과 Claessens et al.(2007) 등은 최근에 들어서 공여국은 점차 특정한 개도국을 선호한다는 “선택적 원조배분관행”을 증명하

였다(selective aid allocation practice). 이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래, 특히 1990년대 말에 들어오면서, 양자 간 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적 필요와 정책과 제도의 건전성에 더 주안점을 두고 배정되어 왔으며, 수원국의 부채규모나 인구규모 및 식민지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었다”고 한다(Claessens et al. 2007).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모두 전략적 정치적 기준으로 원조를 배정하던 현상이 줄어든 이유로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급격한 진전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공여국이 원조배분의 기준에서 공여국 자신들의 이해를 도외시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다.

2008년에 DAC에 가입하기로 정책적 결정을 한 한국정부도 과연 이러한 선택적 원조배분정책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시 말하면 한국정부는 2008년 이전의 원조배분정책과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DAC회원국의 새로운 원조배분정책과 관행으로 전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정책적이면서도 실천적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DAC에 가입하기로 정책결정을 한 2008년 이전의 원조배분 실적과 그 후의 원조배분 실적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려는 시도이다. 이 분석은 앞으로의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는데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장 2012년에 실시될 DAC회원국의 동료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분석과제라고 생각된다.

III. 한국의 유-무상 원조 배분정책과 관행

1. 한국의 원조배분 정책

한국의 원조배분 정책은 정부가 2007년 말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한 “대외개발원조 중기계획: 2008~2010”에 잘 요약되어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가. 사업목표

-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지원
-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등 국제사회의 빈곤감소노력에 적극 참여
- 인도주의적 지원 및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강화

- 개발도상국과의 우호관계 증진

나. 기본방향

- 2000년 MDGs 달성을 목표로 2단계 전략과 실행계획
 - 1단계 (2008~2010): 공적개발원조(ODA)의 기반조성단계
 - 2단계 (2011~2015): 원조의 선진화 추진단계
- 개도국의 빈곤감소 및 지속발전을 위한 개발목표 달성과 개발능력 향상에 기여
 - MDGs 중간점검과정에 적극참여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개도국에 지원확대, 최빈국의 개발과제 해결에 기여
 - 빈곤감소 및 지속발전을 위하여 보건, 교육, 훈련, 거버넌스 개선, 정보통신, 행정제도, 농촌-해양수산 개발 등 제반분야 유기적으로 연계
- 대외원조정책을 한국의 여타 정책과 조화-연계시킴으로써 정책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와 일관성 제고

다. 주요 정책방향

1) ODA 규모 및 무상원조 비중확대

-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상응한 ODA 규모 확대
 - 우리나라 OECD/DAC 가입 (2010년)
 - 우리나라의 ODA 확대방침 (2010년 ODA/GNI 규모 0.109%, 2015년 0.25%)
- 원조효과, 국제적 추세 등 고려, 무상원조비율 제고

2) '선택과 집중' 원칙 유지 (지원국가 및 분야)

① 지원대상국가

- 무상원조: 지원대상국가를 크게 협력대상국가와 기타국가로 구분
 - 2007년에 지원대상국가는 총 129개 국가
 - 협력대상국가는 59개 국가
 - 기타국가는 70개 국가
- 협력대상국가는 OECD/DAC 수원국 명단에서 최빈국(LDC), 저소득국(LIC),

중저소득국(LMIC) 중 우리 상주대사 파견국가

- 상주대사 미파견국이라도 외교적으로 필요한 경우 협력대상국에 포함(10개국)
- 2007년 현재 협력대상국 59개국은 아시아 17, 아프리카 20, 중남미 12, 중동 5, 동구 CIS 5개 국가
- 협력대상국은 다시 중점협력국(19국가)/일반협력국(40국가)으로 구분
 - 중점협력국은 국가전략적 측면에서 장기적, 집중적 ODA제공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 일반협력국은 지속적인 ODA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 협력대상국은 3년을 주기로 선정하되, 매년 필요에 따라 조정

② 아시아

- 중점지원 기초유지
 - 경제, 외교,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 무상원조의 50%선 유지
- ASEAN 개도국, 최빈국 중점지원
 - ASEAN 개도국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중점지원
 - 아시아 최빈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지원규모 확대
- 아프가니스탄은 2002~2007년간 5천만 불 지원하였으나, 중기계획 기간 중에는 사후관리 지원에 국한, 추기지원여부는 전반적인 아프가니스탄 정세 추세에 따라 결정

③ 아프리카

- 아프리카 지원확대 선언('06.3 Korea's Initiative for Africa's Development)에 따라 아프리카 지원확대
 - 중기 기간 중 무상원조의 20%선 유지
- 아프리카 협력대상국 20개국 중 우리 대사파견국 14개 국가 중점지원
 - 이집트,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가나, 모로코, 수단, 앙골라, 알제리, 짐바브웨, 케냐, 코트디브아르, 튀니지
- 아프리카 최빈 개도국에 대한 지원확대
 -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세네갈, 앙골라, 콩고(DRC), 잠비아, 수단, 우간다,

르완다

- 국제기구를 통한 아프리카 지원확대
 - 국제기구를 통한 아프리카 지원은 총 국제기구 지원규모 중 60%내외 유지 (UNDP, UNFPA, UNESCO, UNICEF NEPAD, MOWCA, UNIDO, ITC, IVI 등)

- 국제빈곤감소금은 주로 아프리카 지원에 활용

④ 중남미

- 중남미 협력대상국(12국)들과의 우호협력관계 증진 필요성에 따라, 무상원조 15%선 유지
- 중미통합체 (SICA) 회원국에 대한 지원 지속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⑤ 중동

- 이라크에 대한 제2차 지원 약속 (2008~2011년간, 무상 1억 불, 유상 1억 불 지원)에 대한 성실한 이행
- 팔레스타인은 2005~2008년간 600만 불 지원 약속 이행 후, 주변 중동 지역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 결정

⑥ 중앙아시아/동구

-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을 고려, 중앙아시아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확대
 -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상주공관 신설국가를 협력대상국에 포함
 -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이러한 중기개발원조정책(2008~2010)은 2010년 10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2011~2015)으로 이어진다. 다소 정책의 변화가 있지만 중기계획의 기초는 이어지고 있다.

2. 한국의 원조배분 관행

위에서 본 한국의 중기원조정책(2008~2010)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계획과 실천사이에 항상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수행기간 중에 사정의 변경에 따라서 계획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계획의 시행이 과거의 정책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중기계획 기간인 2008~2010년과 그 이전 기간인 2005~2007년을 비교하여 실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 전체 원조규모의 변화

OECD가 마련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특별보고서(2008)는 먼저 한국정부가 세운 원조증액계획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고, 약속대로 실행되도록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선거공약에서 노무현 정부가 세운 중기계획대로 원조의 규모를 증대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실행하여 왔다. 중기계획은 원조총액을 순지출기준으로 2010년까지 국민소득의 0.11%까지 증가하고, 2015년 까지 0.25%로 증가한다고 했다. 2006~2010년 사이에 한국의 재정지출은 연 7% 증가하였지만, 한국의 ODA는 연 29%씩 증가하였다.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원조규모는 11억 7,400만 달러에 달하였고, 국민소득의 0.12%에 달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 까지 0.25%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에 원조는 국민소득대비 2년마다 평균 0.03% 포인트씩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 0.06%였고, 2008년에 0.09%이었고, 2010년에 0.12%였다. 이러한 추세대로 가면 2015년에는 목표치인 국민소득의 0.25%를 넘어서 0.27%까지 달성할 수 있다.

나. 원조 조건의 변화

원조규모와 관련하여 OECD의 특별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원조의 조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DAC는 이미 1978년에 원조조건에 관한 권고안을 수립하여 회원국이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에도 유효한 이 권고안은 원조의 조건에 관하여 3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조 승인총액의 무상조건(grant element)은 86%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소득대비 원조 승인총액은 회원국의 평균(0.28%)이 되어야 한다. 셋째, 최빈국에 대한 원조승인액은 해마다 모든 최빈국에 대하여 무상조건 90%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거나, 3년 평균 각 최빈

국에 대하여 무상조건 86% 이상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2010년에 이미 첫째와 셋째의 조건을 충족시켰다. 즉 원조 승인총액의 무상조건이 93.6%이고, 모든 최빈국에 대한 원조의 무상조건은 94.5%이며, 각 수원국에 대한 3년간의 원조승인액도 평균 무상조건 86%이상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무상조건(grant element, 증여율)의 원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상원조(loan/credit)에 대비한 무상원조(grant)의 개념과 다르다. 물론 무상원조의 비중을 확대하면 무상조건의 원조비중이 증대한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 2005~2007년 기간에 EDCF가 제공하는 원조(유상원조)의 비중이 KOICA의 무상원조와 합한 총액의 42%였으나, 원조중기계획기간인 2008~2010년 사이에는 45%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무상조건의 원조에 관한 권고를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유상원조의 상당부분이 원조조건(이자율저하, 이자유예기간, 만기상환기간 연장 등)을 완화하여, 원조의 무상조건을 향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유상원조는 최근 최빈국과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사업 등에 이자율을 대폭 완화하였고(0.01%까지), 상환기간도 40년까지 증대하여 무상조건의 원조를 확대하였다.

다만 둘째 기준인 원조 승인총액이 국민소득총액대비 0.20%에 불과하여, DAC의 평균수준인 0.28%에 미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한국정부가 2015년까지 순지출기준 원조총액을 국민소득총액대비 0.25%까지 증가한다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EDCF의 유상원조 승인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소득총액대비 원조승인액은 급격히 증가해왔다. 더욱이 지금 당장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DAC회원국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첫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83.7%), 포르투갈은 셋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둘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가는 그리스(0.17%), 이태리(0.16%), 미국(0.25%)도 있기 때문이다.

다. 유·무상원조의 조정

원조 총규모에 못지않게, DAC의 특별보고서가 한국의 원조에 관하여 가장 관심과 우려를 표시한 것은 유·무상원조간에, 그리고 무상원조기관 간에 일관되고 조정

된 원조정책과 집행이다. 첫째, 유·무상간의 원조와 무상원조기관간의 원조를 통합하는 하나의 원조정책이 한국정부 전체에서는 물론이고, 각 수원국 수준에서도 수립되고 집행되어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최빈국을 포함하여 저소득국가에 원조정책과 집행을 집중하여 수원국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원국의 선정기준과 원조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수원국 수는 물론, 중점지원국가의 수와 각 수원국에서 원조분야를 축소하여 집중과 선택을 통하여 총원조규모가 적은 한국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다자원조기관과 프로그램을 아우를 수 있는 다자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지적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그 동안 얼마나 개선책을 마련하여 실시해왔으며 선진화를 도모하였는지를 분석할 차례이다.

라. 통합원조정책

통합적인 원조정책은 한국정부차원과 각 수원국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한국정부차원에서 유·무상원조간 그리고 무상원조기관 간의 원조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노력은 2005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그 결실을 본 것은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이 2010년 10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결의된 것이다. 2008~2010년의 중기계획 집행의 마지막 해에 결실을 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실을 가져오게 된 것은 OECD의 권고에 크게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OECD의 한국특별보고서(2008)는 통합원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제로서 두 가지를 권고하였다. 하나는 모든 원조활동을 아우르는 하나의 원조입법을 권고하였다. 다른 하나는 모든 원조행정을 지휘·감독하는 하나의 통합원조기관을 설립하라는 권고였다. 이러한 OECD의 권고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원조입법 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2010년 초에 발효하였다. 그러나 통합된 독립된 원조행정기관을 새로이 수립하지는 않았다.

OECD의 권고가 가장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관하여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원조입법에 관하여는 한국을 제외한 22개의 DAC 회원국 중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5개 국가만이 원조입법자체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7개 국가들은 원조에 관한 기본

정책문서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손혁상, 2009). 따라서 새로운 통합입법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관하여서 논의의 여지가 있었다. 한국은 원조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EDCF의 설립법(1987)과 국제협력단(KOICA)의 설립법(1991) 및 보건분야에 한정되어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설립법(2005)은 원조의 목적과 집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근거는 통합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2010년에 발효되고 나서도 이러한 원조기관의 설립법은 폐기되거나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DAC 회원국 중에서 7개국은 법령 없이 오직 기본정책문서에 근거하여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원조의 목적을 기존의 2가지에서 8가지로 다양하게 나열하여 원조목적 상호간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오히려 혼돈을 야기하고 앞으로 다양한 원조기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1) 주관기관 및 중기원조계획

새로운 입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통합된 새로운 원조기관을 탄생시키는 대신에, 원조기관 상호간의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원조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법은 유상원조 기관 간 그리고 무상원조 기관간의 조정과 이행점검 및 지원을 담당할 주관기관으로서 각각 기재부와 외교부를 지정하고, 또 유·무상원조간의 조정과 심의를 도모할 기관으로 국무총리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지정하였다. 또 이 기본법은 원조에 관한 중기정책-계획문서와 매년의 실시계획문서 및 각 수원국별 지원전략문서를 작성할 책임을 주관기관에 부과하여 원조의 선진화에 기여하였다.

사실 원조에 관한 법령을 가진 DAC의 15개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이 법령 외에 다시 원조에 관한 기본정책문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또 법령이 없는 7개의 국가는 오직 기본정책문서에 근거하여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원조에 관한 기본법이 기본정책문서에 해당하는 중기계획을 마련하게 한 것은 원조의 선진화에 기여한 것이다. 실제로 2011~2015년 중기정책계획은 2010년 12월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중기계획을 통해 원조 총규모와 무상조건의 원조규모의 추세를 결정했으며 중점지원국에 대한 지원전략을 작성했다. 이러한 중기계획은 앞으로도 매년의 원조실시계획의 기틀을 제공하여

간접적이지만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조화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조의 예측가능성과 조화성은 원조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2005)이나 아크라행 동계획(2008)에서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미 강조되었고, 원조에 관한 부산총회(2011)에서도 거듭 강조되었다.

2) 매년의 원조실시계획

매년의 원조실시계획은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원조의 일관성과 조화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약40개에 육박하는 원조기관이 제공하는 원조를 한 곳에서 조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따라서 모든 기관의 원조가 조화되어서 일관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기초도 결여되어 있었다. 매년의 실시계획은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여 원조의 중기계획과의 일관성 및 원조기관 상호간의 일관성과 조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원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는 캐나다에서 원조예산의 작성과 배분을 모든 원조관련기관과 예산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원조예산의 일관성과 조화성을 확보하는 관행에 근접하는 선진화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중기계획과의 일관성 및 원조의 예측가능성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의 실시계획은 당해 연도의 원조예산뿐만 아니라 추후 2년간의 매년원조실시계획추정치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DAC회원국의 절반 이상이 실행하고 있는 선진화된 관행이다(OECD 2009).

3) 국별지원전략

각 수원국 수준에서 한국원조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은 OECD의 한국원조특별보고서(2008)에 잘 강조되었다. 유·무상간의 원조는 물론이고, 40개에 육박하는 무상원조기관이 하나의 수원국에 대하여 통합되거나 조정된 원조전략이나 정책 없이 원조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각 수원국에서 한국정부의 원조사이에는 중복과 충돌이 빈번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힘입어 한국정부는 2005년부터 유·무상원조기관이 각 각 작성하여 실시하던 수원국별 지원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2008년부터 하나의 문서로 통합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OECD의 특별보고서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통합은 단순히 두개의 문서

를 하나로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일관된 정책과 계획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선진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하여 실제로 일관성 있는 통합된 국별지원전략을 마련하기로 하고, 원조기관 간에 조정과 협력을 거듭하여 2011년 6월에 베트남에 대한 통합국별지원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이어서 같은 해에 가나와 솔로몬군도에 대한 지원전략도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2년까지 26개의 중점지원국 모두에 대하여 국별지원전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한국원조의 역사에서 선진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직도 이러한 전략문서에는 선진외국이나 국제기구의 관행과 달라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선진화 과제가 있다. 먼저 국별지원전략은 전략만 있고, 전략의 이행계획이 없다는 결점이 있다. 따라서 전략문서는 매년의 원조실시계획 작성과 예산편성에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다. 둘째, 유·무상 원조기관간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기준은 개략적이지만 원조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즉 유상원조는 각 수원국에서 인프라와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무상원조는 최빈수원국을 포함하여 저소득국에서 MDGs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의 정책적 지휘감독을 받아 KOICA가 수행하는 무상원조와 다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무상원조사이에는 역할분담과 책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어떠한 정책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30여개의 무상원조기관 상호간에는 협력해야 한다는 명제만 존재하고, 중복과 충돌을 피하고 조정-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장치는 아직도 존재 하지 않는다.

마. 원조의 배분

OECD의 한국원조특별보고서(2008)는 한국이 최빈국과 저소득국가에 대한 원조에 더욱 힘을 쏟아야하고, 수원국 선정기준과 원조배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적용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점에서 얼마나 선진화를 이룩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원조의 수원국 소득수준별배분, 지역별배분, 분야별배분 실태를 먼저 점검하고, 수원국의 선정기준과 원조배분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득수준별 배분

OECD의 한국특별보고서(2008)가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한국의 원조정책과

관행중의 하나는 수원국의 소득수준별 원조의 배분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유상차관과 무상원조라는 두 가지 원조수단을 빈곤감소와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조목적에 반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예컨대 2005~2007년 기간의 KOICA와 EDCF의 원조는 첫째, 전체원조 중에서 최빈개도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의 비중(35%)이 DAC의 평균(44%)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고, 전체원조의 56%가 중진국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의 비중을 늘리라는 권고를 했다. 둘째,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원조는 대부분 유상차관(63%)이고 무상원조는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타 저소득국을 포함하여도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가 대부분이(54%) 양허성 차관이다. 이에 반하여, 중하위 소득국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이 (68%) 무상원조라는 것이다. 부채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최빈개도국과 저소득국에는 주로 유상원조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높은 중소득국에는 주로 무상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채탕감노력에는 참가하지 않으면서, 최빈국의 부채비중을 늘려서 다시 부채위기를 불러올 위험성이 있는 원조 정책을 수행하고 있고, 빈곤감소에도 도움이 안될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무상 원조정책과 관행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것은 또한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 유-무상원조를 아우르는 일관되고 통합된 원조 정책의 부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언급하였다.

2008~2010 기간에 한국은 이러한 DAC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원조배분정책과 관행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첫째, KOICA와 EDCF의 전체원조 중에서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는 35%에서 43%로 늘어나서 DAC평균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자연히 중진국 특히 중하위소득국에 대한 원조의 비중은 48%에서 41%로 줄어들었다. 둘째, 최빈개도국에 대한 전체 원조 중에서 유상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45%로 현저히 감소하여 무상원조가 55%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빈개도국 및 저소득국에 대한 무상 원조의 비중도 46%에서 63%로 크게 증가하여 빈곤감소와 MDGs의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선진화를 향한 이러한 변화는 원조기관의 정책변화에 기인한다.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EDCF의 원조정책과 관행이 최빈개도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원조를 줄이고(45%에서

35%), 중소득국 (63%) 특히 중하위소득국(48%) 중심으로 옮겨가고, 또 KOICA의 무상원조도 중소득국에 대한 원조 비중을 줄이고(59%에서 37%), 최빈개도국 및 기타저소득국에 대한 원조 비중을 늘렸다(8%에서 50%). 또 이러한 변화와 유·무상 원조기관간의 역할의 조정을 이끌어낸 국무총리실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노력이 주효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소득수준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5~2007)

소득수준	한국양자원조의 평균Korean ODA Average (2005-07)						DAC 양자원조 평균 (2005-07)	
	KOICA (grant)		EDCF (loan)		총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최빈개도국	39	17.2	65	39.3	103.4	26.6	28,962	27.1
		12		63		100		
저소득국	25	11.1	9	5.4	33.7	8.7	17,543	16.4
		74		27		100		
중하위소득국	127	56.5	59	35.7	185.8	47.7	31,903	30
		68		32		100		
중상위소득국	5	2.2	26	5.8	31.1	8.0	4,220	4
소 계	195.37	87.0	158.69	96.2	354.1	90.9	82,628	77.5
미분류	29	13.0	6	3.8	35.5	9.1	24,091	22.5
총 계	224.6	100.0	165.0	100.0	389.6	100.0	106,680	100.0

[표 2] 소득수준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8~10)

소득수준	한국양자원조 평균 (2008-10)*						DAC 양자원조평균 (2008-10)*	
	KOICA		EDCF		총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최빈개도국	112	33.4	90	32.3	202.5	32.9	41,398	32.2
		55		45		100		
저소득국	54	16.2	8	2.8	62.3	10.1	13,753	10.7
		87		13		100		
중하위소득국	118	34.9	135	48.2	252.2	41.0	28,028	21.8
		47		53		100		
중상위소득국	6	1.7	42	15.0	47.5	7.7	7,832	6.1
		12		88		100		
소 계	289.64	86.1	274.78	98.3	564.4	91.7	91,011	70.8
미분류	47	13.9	5	1.7	51.3	8.3	37,646	29.2
총 계	336.2	100.0	279.5	100.0	615.7	100.0	128,657	100.0

*순지출 양자원조

2) 지역별 배분

2005~2007년간의 한국의 양자원조는 아시아지역에 집중도를 높였다(44%).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OECD의 한국특별보고서 (2008)는 아시아에 위치해있는 한국으로서 이해가 가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 선택과 집중을 권유하는 DAC로서는 예상되는 반응이었다. 2008-10년 사이에는 아시아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높아졌다(55%). 중기원조계획에서 세운 무상원조의 목표치인 50%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근접하였다(47%). 그 대신 중동에 대한 원조비율이 줄어서 중기계획에서 세운 이라크에 대한 무상원조 1억 및 유상원조 1억 달러의 목표보다 적게 배분하였다(6천만 달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빈곤률이 낮은 중동 대신에 세계에서 가장 빈곤인구와 빈곤률이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는 것은 빈곤감소와 MDGs 달성에 기여하고 선진화의 방향과 같다. 특히 아시아 다음으로 빈곤인구와 빈곤률이 높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2005~2007년의 13%에서 2008~2010년간에는 15%로 증가하였다. 중기원조계획에서 세운 무상원조의 20%라는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2005~2007년간의 12%에서 2008~2010년간에 17%로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는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06년에 정부는 “아프리카 개발정책(Initiative for Africa Development)”을 발표하여 2008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3배로 증가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실제로 3배까지는 증가되지 못했지만 2005~2007년간의 1억 5,400만 달러에서 2008~2010년간 2억 7,800만 달러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다만 OECD의 보고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이미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어느 나라의 어떤 분야에 원조를 증가시킬 것인가는 다른 원조공여국의 정책과 관행을 고려하고 조정과 협력을 꾀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가 어떤 정책의 틀 속에서 증가되었는지에 관한 명확한 정책은 천명되지 않았다. 또 OECD의 특별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빈곤률이 낮은 중남미에 대한 원조도 전체 원조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분명한 정책은 천명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남미에 대한 원조는 두 비교기간에 8%에서 10%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중기원조계획에서 무상원조의 목표였던 15%는 달성하지 못하고 11%에 그쳤다.

[표 3] 지역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5~2007)

지역	한국양자원조의 평균 (2005-07)*						DAC 양자원조의 평균 (2005-07)*	
	KOICA		EDCF		총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Africa	27	12.1	24	14.6	51	10.5	39,257	36.8
		53		47		100		
Asia	76	33.7	97	58.9	173	35.3	20,275	19
		44		56		100		
America	21	9.1	11	7.0	32	6.5	6,885	6.5
		66		34		100		
Middle East	64	28.4	11	6.6	75	15.2	17,713	16.6
		85		15		100		
Oceania	1	0.3	-	-	1	0.2	1,217	1.1
		100.0		-		100		
Europe	8	3.5	15	9.2	23	4.7	4,418	4.1
		35		65		100		
소 계	196	87.2	159	96.2	455	92.8	89,765	84.1
미배분	29	12.8	6	3.8	35	7.2	16,915	15.9
총 계	225	100.0	165	100.0	490	100.0	106,680	100.0

[표 4] 지역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8~2010)

지역	한국양자원조의 평균 Korean ODA Average (2008-10)*						DAC 양자원조의 평균 (2008-10)*	
	KOICA		EDCF		총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Africa	59	17.4	34	12.2	93	15.0	46,971	36.5
		63		37		100		
Asia	157	46.6	183	65.4	339	55.1	26,437	20.5
		46		54		100		
America	36	10.8	24	8.7	61	9.8	9,707	7.5
		59		41		100		
Middle East	19	5.8	5	1.9	25	4.0	13,263	10.3
		23		77		100		
Oceania	-	-	-	-	-	-	1,704	1.3
Europe	19	5.6	28	10.1	47	7.7	5,608	4.5
		40		60		100		
소 계	290	86.2	275	98.3	564	91.7	103,690	80.6
미배분(기타)	47	13.8	5	1.7	51	8.3	24,967	19.4
총 계	336	100.0	279	100.0	616	100.0	128,657	100.0

*순지출 양자원조

3) 분야별 원조배분

OECD의 특별보고서는 한편으로는 한국원조의 집중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의 분야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수원국에서 다른 원조공여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2~3개의 우선분야에 집중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는 DAC회원국들이 분업을 통하여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감안한 것이고, 또 한국의 원조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얹게 배분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표 5] 분야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5~2007)

분야	한국의 양자원조 평균 (2005-2007)*						DAC 양자원조 평균 (2005-07)*	
	KOICA		EDCF		총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사회-행정 인프라	111	49.5	61	36.9	172	44.2	37,764	35.4
		65		35		100		
경제 인프라	51	22.5	84	50.9	135	34.5	12,374	11.6
		38		62		100		
생산	11	4.7	12	7.1	22	5.7	5,654	5.3
		50		50		100		
다분야통합	33	14.9	1	0.4	34	8.8	6,934	6.5
		97		3		100		
프로그램	-	-	-	-	-	-	3,520	3.3
인도주의적	16	6.9	-	-	16	4.0	8,644	8.1
		100				100		
기타 (부채탕감, 행정비 등)	3	1.5	8	4.6	11	2.8	31,790	29.8
		27		73		100		
소 계	225	100.0	165	100.0	390	100.0	106,680	100.0
미배분		NA		NA		NA	-	
총 계	225	100.0	165	100.0	390	100.0	106,680	100.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2008~2010년간 한국 원조의 분야별 배분은 거의 선진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사실상 DAC회원국이 전통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분야에서 원조를 제공해왔다. 무상원조의 경우에 약 60개의 모든 협력대상국에서 평균 7개의 분야에서 원조가 제공되었다. 반면에 DAC회원국이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전혀 원조 실적이 없고, 인도적 지원분야는 오히려 원조 비중이 감소하여(2%) DAC회원국 평균(8%)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지만, 다분야통합 사업(multi-sector)은 DAC회원국 평균(9%)보다 월등히 높다(18%). 두 비교기간 모두에서 사회·행정분야의 원조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는(42%) DAC 평균(39%)과 큰 차이가 없지만, 경제적 인프라에 대한 원조는(32%) 여전히 DAC 평균(17%)보다 현저히 높다. 이것은 한국원조에서 독특하게 비중이 높은 유상원조가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무상 두 원조기관 사이에는 국가전체의 통합원조정책의 필요성만 강조될 뿐이고, 아직도 구체적으로 분업의 기준이나 정책이 분명하지 않다는 선진화의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무상원조와 유상원조기관이 둘 다 사회·행정분야와 경제인프라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으로 조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미 지적한대로 수원국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가 사실상 분업의 영역을 명확히 해가고 있는 실정은 앞으로 분야별 원조배분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이다.

[표 6] 분야별 원조배분: 한국과 DAC 비교 (2008~2010)

분야	한국의 양자원조 평균 (2008-10)*						DAC 양자원조 평균 (2008-10)*	
	KOICA		EDCF		총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사회-행정 인프라	147	43.8	110	39.5	258	41.9	49,469	38.45
		57		43		100		
경제 인프라	60	17.9	136	48.5	196	31.8	21,550	16.75
		31		69		100		
생산	30	9.1	27	9.5	57	9.3	9,135	7.1
		53		47		100		
다분야 통합	60	17.9	2	0.6	62	10.1	11,836	9.2
		97		3		100		
프로그램	-	-	-	-	-	-	5,403	4.2
인도주의적	14	4.0	-	-	14	2.2	10,679	8.3
		100				100		
기타 (부채탕감, 행정비 등)	24	7.2	5	1.9	30	4.8	20,585	16
		80		20		100		
소 계	336	100.0	279	100.0	616	100.0	128,657	100.0
미배분		NA		NA		NA	-	
총 계	336	100.0	279	100.0	616	100.0	128,657	100.0

*순지출 양자원조

바. 수원국 선정기준과 원조배분 기준

DAC의 한국특별보고서(2008)는 DAC 평균에 비하여 수원국의 수가 너무 많으며, 국별 원조배분기준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투명한 기준의 설정을 권고하였다. 수원국 수는 2008년에 129국에 달하였고, 이를 59개의 협력대상국과 70개의 기타 협력국으로 구분하였다. 협력대상국도 다시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국으로 구분하였다.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19개의 중점협력국이 있었고,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11개의 중점협력국을 지정하였으나, 그 중 7개 국가는 유상과 무상원조에 공통이었기 때문에 총 23개의 중점협력국이 있었다.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은 수원국의 수(120여개 국가)는 중기계획기간인 2008~2010년에도 변화가 없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다만 EDCF는 약 30여개 국가). DAC의 선진국에서는 총 수원국의 수는 모두 한국과 유사한 100~130개 국가이지만, 대부분 대표적인 원조실시기관의 수원국 수를

30~70개 내외로 한정하여 선택과 집중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머지 원조는 외교부나 기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분업과 전문화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KOICA와 EDCF와 같은 대표적인 원조공여기관은 개발원조에 집중하고, 외교적 목적이 강한 원조는 다른 원조기관을 이용한다. KOICA는 2008년에 59개의 협력대상국에 양자원조의 94%를 집중하고 있지만 나머지 6%의 원조를 70개국에 산발적으로 각 각 소액을 제공하고 있어서 원조행정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점지원국을 유·무상 공통으로 26개 국가로 통합하여 지정한 것은 선진화의 길로 가고 있다.

중기원조계획(2008~2010)은 DAC의 비판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선정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협력대상국의 선정기준이 된 한국 대사의 상주는 그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또 상주대사가 없는 국가도 10여국 포함되어있다. 또 중점협력국 선정기준도 국가의 전략적 측면에서 장기적이며 집중적으로 원조가 제공되어야 하는 국가로 되어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수원국의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국별 원조의 배분기준이 불명확하다는 DAC의 비판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 협력대상국과 기타협력국에 대한 원조의 배분이 어떻게 구별되고, 중점지원국에 대한 원조의 배분이 어떻게 집중적이고 장기적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중기원조계획에도 없었고, 실제 관행도 투명하지 않다.

그러나 수원국의 선정기준과 원조의 배분기준이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다는 DAC의 비판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의 모든 DAC회원국과 원조기관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Alesina and Dollar 2000, Alesina and Weder 2002). 다만 최근의 실증적(2000년 초까지의 자료사용) 연구에 의하면, DAC회원국은 점차 빈곤 감소라는 세계적인 원조의 목적에 적합한 선정기준과 배분기준을 적용하는 선택적 원조배분(selective aid allocations)추세에 있다고 한다(Dollar and Levin 2004, Berthelemy and Ticher 2004, Claessens et al 2007, Bandyopadhyay and Wall 2007). 즉 선진 원조공여국은 저소득국가, 인력개발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정치적 경제적 제도와 정책이 건전한 국가, 빈곤 인구가 많은 국가 등을 점차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IV. 한국의 원조배분기준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

1. 선진국의 선택적 원조배분 추세 확인분석

선택적 원조배분추세라는 주장이 과연 최근에도 진실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필자는 2005~2009년의 원조에 관한 최신의 통계를 구득할 수 있는 157개의 수원국에 대한 22개의 DAC 회원국과 한국이 제공한 원조와 독립된 설명변수의 통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DAC회원국들과 한국이 과연 Collier and Dollar의 빈곤감소 최적합원조배분모델(2002)에 상응하는 원조를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이계우 2011). 공여국의 원조관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일반회귀 분석모델(*generalized least square model with heteroskedasticity*)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A_{ijt} = a_0 + b_i + c_t + d_j + fX_{ijt} + e_{ijt} \quad (1)$$

· A_{ijt} : 각 수원국(i)이 표집기간(t)에 각 공여국(j)으로부터 받은 원조의 실질규모

· a_0 : 모든 수원국에 공통되는 절편

· b_i : 표집기간에 걸쳐서 고정된 각 수원국의 독특한 절편

· c_t : 표본기간에 걸쳐서 변화하지만 모든 수원국과 공여국에 공통되는 절편

· d_j : 표본기간에 걸쳐서 고정된 각 공여국의 독특한 절편

· X_{ijt} : A_{ijt} 의 변화를 설명하는 독립변수의 벡터¹⁾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DAC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수원국의 일인당 실질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인구가 많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원조액은 수원국의 시민권 신장이나 정부의 효과성 수준과는 오히려 반비례하였다. 또 영아사망률과 같은 수원국의 인력개발 필요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감소를 위한 선택적 원조배분이론과 상치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DAC 회원국은 공여국 자신의 교역상의 이익을 상당히

1) 일인당 국민소득과 그 제곱, 영아사망률과 그 제곱, 시민권신장수준, 정부의 효과성 수준, 인구규모, 원조 공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그 제곱, 원조공여국에 대한 수출과 그 제곱, 원조공여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와 그 제곱

반영하는 원조배분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여국으로부터 더 많이 수입하는 개도국이나, 공여국에 더 많이 수출하는 개도국에는,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한 공여국의 직접투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의 선택적 원조배분 추세 확인 분석

DAC회원국에 적용한 것과 꼭 같은 측정모델을 2005~2007년의 기간과 2008~2010년 중기원조계획기간에 한국의 KOICA와 EDCF가 제공하는 원조의 총합에 적용하고, 또 KOICA와 EDCF가 제공하는 각각의 원조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 결과, 총원조는 중기계획기간에 상당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즉 중기계획기간에는 그 이전 기간과 달리, 국민일인당 실질소득수준이 낮은 개도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고, 영아사망률이 높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고, 인구가 많을수록 더 많은 원조를 제공했다. 또 정부의 효과성이 높은 개도국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여서, 빈곤감소라는 원조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원조배분실적을 보였다. 이는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이전 기간에는 시민권의 신장이 높은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였으나, 중기계획기간에는 이러한 기준을 의미 있게 고려하지 않아서, 빈곤감소라는 목적에서 볼 때에 오히려 퇴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 이전기간과 마찬가지로, 중기계획기간에 한국 KOICA와 EDCF의 총원조는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나 직접투자를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DAC회원국의 실적과 구별된다. 즉 한국은 수원국의 필요를 DAC회원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특히 영아사망률과 같은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한 점에서), 수원국의 시민권신장과 같은 민주주의 발전 정책과 제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선진화에 뒤져있다. 반면에 공여국의 교역정책을 원조의 배분에서 고려하지 않아서 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의 필요와 공여국의 국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DAC회원국과 한국의 원조배분을 비교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의 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표 7 참고).

원조배분의 기준에 관한 같은 분석모델을 KOICA와 EDCF의 원조배분에도 각각

적용하였다. KOICA는 중기계획기간(2008~2010)에 그 이전의 기간(2005~2007)과 달리, 일인당 실질소득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실적을 보였다. 이러한 실적은 빈곤감소라는 원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최빈국과 저소득국에 무상원조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DAC의 권고에 반하고 선진화로부터 치명적으로 퇴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기간과 달리, 영아사망률과 같은 인력개발의 필요성과 빈곤인구규모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또 그 이전기간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시민권신장과 정부의 효과성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선진화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에 중기계획 이전의 기간과 달리, 수원국에 대한 수출과 직접투자 및 수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원조배분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동시에 한국의 국익을 신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EDCF도 중기계획기간에 그 이전의 기간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일인당 실질소득수준과 영아사망률과 같은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추세는 DAC의 권고를 수용하여, 원조의 중심을 최빈개도국과 기타 저소득국으로부터 중진국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기간과 달리, 인구규모와 시민권의 신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조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다만 그 이전기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 중기계획 이전기간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에 대한 교역과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KOICA와 마찬가지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를 통하여 동시에 한국의 국익을 신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원조의 배분에서 개도국의 개발필요성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공여국의 국익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 것은 선진화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는, 자발적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적개발원조(NGOs, 사적단체 및 사기업 등의 원조)와 달라서, 원조를 통하여 개도국의 발전과 공여국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표 7] 원조배분기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DAC 회원국, 한국, KOICA, EDCF

종속변수: 수원액 (2005 불변가격 달러)	DAC 회원국 (2005~09)	KOICA+ EDCF (2008~10)	KOICA+ EDCF (2005~07)	KOICA (2008~10)	KOICA (2005~07)	EDCF (2008~10)	EDCF (2005~07)
수원국 속성효과 통제	Y	Y	Y	Y	Y	Y	Y
연도 가변수	Y	Y	Y	Y	Y	Y	Y
원조공여국 가변수	Y	Y	Y	Y	Y	Y	Y
공통질변	57.81821* (18.80)	52.67486* (3.07)	2.683334 (0.88)	48.17466* (2.94)	21.33065* (8.38)	-61.08246 (-0.76)	(dropped)
실질일인당 GDP	-1.812406* (-5.13)	-0.027868* (-24.71)	(dropped)	-0.151947 (-1.63)	-0.19882* (-3.64)	-0.006511 (-1.34)	(dropped)
실질일인당 GDP의 제곱	0.0775636* (4.70)	1.29E-06* (34.96)	-1.14E-06* (-52.96)	0.0025118 (1.28)	0.006429* (3.62)	6.74E-07* (4.57)	-1.35E-06* (-6.58)
영아사망률	-0.0593616 (-0.47)	0.2771697* (5.09)	0.0318128 (0.77)	0.521096* (15.07)	-0.36163* (-14.07)	0.3790932 (0.74)	0.5587038 (1.88)
영아사망률의 제곱	-0.001732* (-2.21)	-0.002664* (-5.17)	-0.000306 (-1.04)	-0.00518* (-17.63)	0.001601* (12.58)	-0.004741 (-1.10)	-0.008175* (-2.90)
시민권과 참정권	-0.490909* (-3.12)	0.0021943 (0.09)	0.2347748* (3.8)	0.068519* (7.92)	0.064224* (2.60)	0.962713* (2.91)	(dropped)
정부의 효과성	-1.984915* (-2.89)	1.597834* (2.51)	0.0871865 (0.38)	2.55858* (9.07)	0.51971* (6.23)	3.346035 (0.75)	-2.175405 (-0.73)
인구규모	0.3969686* (2.89)	0.0011204* (31.25)	(dropped)	0.375007* (5.54)	0.0372903 (0.84)	0.001881* (9.43)	(dropped)
인구규모의 제곱	-0.000157 (-1.79)	-2.94E-10* (-30.71)	1.33E-12* (6.20)	-0.00016* (-4.95)	5.25E-06 (0.24)	-4.94E-10* (-9.37)	1.48E-12* (9.33)
원조공여국에 대한 실질 수출액	4.32E-07* (2.45)	2.14E-07 (1.23)	-3.71E-07 (-1.79)	1.12E-07 (1.27)	-1.68E-06* (-6.88)	-2.70E-06 (-1.41)	3.76E-06 (0.65)
원조공여국에 대한 실질 수출액의 제곱	-3.90E-15* (-5.20)	5.81E-15 (0.57)	1.03E-14 (0.43)	5.83E-15* (2.24)	1.04E-13* (4.46)	2.43E-14 (0.68)	-9.54E-13* (-2.60)
원조공여국으로 부터의 실질 수입액	1.30E-06* (4.20)	-3.54E-08 (-0.2)	4.62E-07 (1.85)	-1.28E-07 (-0.9)	9.18E-07* (4.93)	2.55E-06 (1.49)	-5.08E-06* (-3.15)
원조공여국으로 부터의 실질 수입액의 제곱	3.77E-14* (2.46)	-1.28E-15 (-0.93)	-3.55E-14 (-1.26)	8.11E-16 (1.26)	-1.03E-13* (-4.17)	-1.38E-14 (-1.63)	1.05E-12* (2.66)
원조공여국으로 부터의 직접투자	0.0015829 (1.88)	7.94E-07 (0.19)	9.70E-07 (0.35)	1.39E-06 (1.94)	1.84E-06* (3.58)	7.72E-07 (0.08)	0.0000199 (1.92)
원조공여국으로 부터의 직접투자의 제곱	-5.84E-09 (-0.03)	-8.64E-13 (-0.24)	2.22E-12* (2.29)	-1.9E-12* (-2.28)	1.38E-12* (2.59)	2.24E-13 (0.02)	-2.11E-11* (-2.42)
관찰치의 수	5.540	336	366	325	359	103	88
전반적 모형의 적합성 점검	Waldchi²(170) =30882 Prob>chi²=0	Waldchi²(124) =58859.21 Prob>chi²=0	Waldchi²(131) =6000.33 Prob>chi²=0	Waldchi²(123) =6452.76 Prob>chi²=0	Waldchi²(133) =7299.20 Prob>chi²=0	Waldchi²(43) =37739.31 Prob>chi²=0	Waldchi²(36) =710.81 Prob>chi²=0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괄호안의 숫자는 z-값.

많은 DAC회원국이 기본정책문서에서 상호호혜(mutual benefits)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KOICA와 EDCF의 설립법도 개도국과의 우호협력과 상호교류 즉 상호호혜를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과 함께 원조의 기본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미 본바와 같이, DAC회원국은 원조의 배분에서 개도국의 개발필요성과 동시에, 공여국의 교역상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개도국의 개발필요성보다도 공여국의 교역상의 국익을 더 우선시하여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현상이 문제점이다.

V. 결론 및 권고

본 논문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얼마나 선진화 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로 정책적 결정을 한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후에 한국의 원조정책과 관행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원조정책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OECD가 2008년에 한국의 원조정책과 관행에 관한 특별심사보고서에서 가장 통렬히 비판하고 권고안을 제시한 통합적 원조정책과 관행 및 수원국의 선정과 원조배분기준에 중점을 두었다. 주된 내용은 원조규모와 조건, 통합적 원조정책, 유·무상원조의 통합·조정된 원조배분, 수원국 선정기준과 원조배분기준이다.

원조규모와 조건에 관하여는 만족할 만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2008년 이후 원조 규모는 해마다 29% 증가하여 재정총지출의 증가수준인 7%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5년까지 국민소득대비 0.25%라는 순지출 기준 원조규모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승인기준으로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원조의 무상조건목표는 총원조액 대비 기준(86%)과 최빈국에 대한 기준(90%)은 현재에 이미 달성하였고, 원조규모목표를 달성하면,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 원조정책의 운용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고(2010), 통합된 중기원조정책과 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고, 유·무상별로 원조조정과 이행점검 및 지원을 담당할 주

관기관(기재부와 외교부)을 지정하여 매년실시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왔고, 원조를 최종적으로 심의 조정할 기관(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국무총리산하에 구축·운영하여왔다. 또 형식적으로만 결합되었던 국별지원전략(CPS)도 실질적으로 유·무상을 통합한 전략을 26개 중점협력국 중에서 3개 국가에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운영하기 시작 하였다(2011). 다만 전략에는 이행계획이 아직 전무하고, 무상원조기관간의 협력과 조정이 미약하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유·무상원조의 통합·조정된 원조배분에 관하여서는 소득수준별 배분과 지역별 배분에서는 큰 조정의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분야별 배분에서는 아직도 유·무상간에 또 무상원조기관간에 협력과 조정이 미약하여 앞으로의 과제가 남아있다. 소득수준별 배분에서는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집중하면서도 무상원조를 많이 제공하였고, 유상원조는 중소득국에 집중하여 OECD의 권고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지역별배분에서도 OECD 권고대로 집중도를 달성하였고, 목표에는 미달이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지역배분 정책과 기준이 세부적으로 더욱 명확하고 투명하게 적용되어야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분야별 배분에서는 성과가 미약하였다. 특히 유·무상간의 분업과 전문화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무상원조기관 상호간의 분업과 전문화 기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과 조정이 만족스럽지 못했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졌다.

수원국 선정과 원조배분기준에 관하여서는 수원국 수의 축소에서 전혀 진전이 없었고, 국별 원조배분기준의 명확성과 투명성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따라서 한국 원조의 현실적 배분기준을 알기 위하여, 통계학적 분석방법을 동원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원조배분은 DAC의 다른 회원국만큼은 선진화를 이룩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에 비하여 “선택적 원조”라는 선진화를 향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저 소득 국가, 저 인력개발 국가, 과다빈곤인구 국가, 정부의 효과성 높은 국가에 원조를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그러나 시민권과 참정권의 신장과 같은 민주적 정치적 제도와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원조를 배분하며, 수원국의 개발과 함께 한국의 국익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는 과제도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미제과제에 관하여서는 선진화방안(2011~2015)에도 해결의 필요성만 역설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구체체적인 전략이 빈약하다. 앞으로 국무총리산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유·무상원조 주관기관이 모든 원조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손혁상,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이후의 한국의 대외원조 정책과제," 국제개발협력연구 2(1), 2010, pp.33-49.

이계우, "공적개발원조 배분정책과 실적: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 한국개발연구 33(4), 2011, pp.49-83.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 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2000, pp.33~63.

Alesina, Alberto and Beatrice Weder, "Do Corrupt Governments Receive Less Foreign Aid," NBER WP 7108, 1999.

Bandyopadhyay, Subhayu and Howard J. Wall, "The Determinants of Aid in the Post-Cold War Era,"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89(6), 2007, pp.533~547.

Berthelemy, Jean-Claude and Ariane Tichit, "Bilateral Donors Aid Allocation Decisions: A Three-dimensional Panel Analysis,"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13(3), 2004, pp.253~274.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90(4), September 2000, pp.847~868.

Claessens, Stijn, Danny Cassimon, and Bjorn Van Campenhout, "Empirical Evidence on the New International Aid Architecture," IMF Working Paper, WP/07/277, Washington, D.C., 2007.

Collier, P. and D. Dollar,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6(8), 2002, pp.1475~1500.

Dollar, D. and A. Kraay, "Growth is Good for the Poo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587,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2001.

Dollar, D. and V. Levin, "Increasing Selectivity in Foreign Aid: 1984-2002,"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3299, World Bank, Washington, D.C., 2004.

Maizels, Alfred and Machiko Nissanke, "Motivations for Aid for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12(9), 1984, pp.879-900.

Neumayer, Eric, *The Pattern of Aid Giving: The Impact of Good Governance on Development Assistance*, Routledge, London, 2003.

McKinlay, Robert D. and Richard Little, "The U.S Aid Relationship: A Test of the Recipient Need and the Donor Interest Models," *Political Studies* 27(2), 1979, pp.236-250.

OECD, *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2011.

OECD, *Managing Aid*, Paris, 2009.

OECD, *Special Review of Korea*, Paris, 2008.

OEC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Paris, 2008.

OECD, *The Paris Declaration for Aid Effectiveness*, Paris, 2005.

Sundberg, Mark and Alan Gelb, "Making Aid Work," *Finance and Development*, December 2006, pp.14-17.

Trumbull, W. and H. Wall, "Estimating Aid-Allocation Criteria with Panel Data," *Economic Journal* 104(425), 1994, pp.876-882.

Wall, H., "The Alloc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Journal of Policy Modeling* 17(3), 1995, pp.307-314.

World Bank,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8.